1.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규정

[제1조] 목적

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, 학술활동, 연수교육, 수련병원, 자격인정, 자격갱신 및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제2조] 정의

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.

① "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"라 함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,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,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.

② "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전임의"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.

③ "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"이라 함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④ "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지도전문의"란 분과전문의자격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. 분과지도전문의가 2인 이상인 경우, "책임 분과지도전문의"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[제3조] 의의

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신경학에 대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.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.

[제4조] 조직

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,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-6명의 위원을 둔다.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.

③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,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,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.

④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.

[제5조]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

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(연수강좌, 실습교육, 및 학술대회)을 통해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범위와 취득해야 할 평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적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[제6조] 수련

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.

②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목표, 수련기간, 수련내용 및 수련병원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③ 전임의의 정원, 수련 내용과 과정, 수련 규칙 및 기록, 기타 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[제7조]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및 갱신

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및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[제8조] 자격인정

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, 응시요건 및 응시절차와 인정방법에 대한 사항은 제4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[제9조]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및 자격갱신

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

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자격갱신 방법은 제5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③ 경과규정(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) :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.

④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